# 덕성여자대학교학칙

1968.	3.	1 개	정 196	9. 3	. 1	개정	1971.	3.	1	개정	1971.	10. 20	개정
1975.	9.	1 개	정 197	6. 5	. 1	개정	1979.	3.	1	개정	1979.	5. 10	개정
1980.	3.	1 개	정 198	2. 3	. 1	개정	1984.	3.	17	개정	1986.	10. 5	개정
1990.	2. 1	4 개	정 199	1. 10	. 5	개정	1993.	4.	2	개정	1993.	9. 8	개정
1994.	5. 1	4 개	정 199	5. 6	. 10	개정	1997.	3.	1	개정	1998.	9. 1	개정
1998.	12.	1 개	정 200	0. 3	. 1	개정	2001.	9.	1	개정	2002.	9. 16	개정
2003.	1.	7 개	정 200	3. 3	. 24	개정	2004.	1.	12	개정	2004.	3. 1	개정
2004.	3. 2	2 개	정 200	4. 5	. 24	개정	2005.	3.	1	개정	2005.	4. 18	개정
2006.	2. 2	7 개	정 200	6. 7	. 19	개정	2006.	9.	29	개정	2006.	12. 19	개정
2007.	3. 1	3 개	정 200	7. 4	. 26	개정	2007.	11.	19	개정	2008.	1. 21	개정
2008.	2. 2	6 개	정 200	8. 5	. 22	개정	2008.	9.	29	개정	2009.	3. 25	개정
2009.	5. 2	6 개	정 200	9. 6	. 22	개정	2009.	10.	22	개정	2009.	11. 26	개정
2010.	3. 2	5 개	정 201	0. 5	. 24	개정	2010.	10.	8	개정	2011.	1. 20	개정
2011.	5. 1	2 개	정 201	1. 6	. 30	개정	2012.	5.	24	개정	2012.	6. 28	개정
2012.	8. 1	4 개	정 201	2. 12	. 21	개정	2013.	1.	23	개정	2013.	5. 9	개정
2013.	6. 2	4 개	정 201	3. 12	. 23	개정	2014.	2.	18	개정	2014.	5. 15	개정
2014.	10. 3	1 개	정 201	4. 12	. 24	개정	2015.	2.	25	개정	2015.	4. 3	개정
2015.	5. 2	9 개	정 201	5. 11	. 24	개정	2016.	2.	17	개정	2016.	4. 26	개정
2016.	8. 3	0 개	정 201	6. 11	. 17	개정	2017.	2.	17	개정	2018.	2. 19	개정
2018.	4. 2	3 개	정 201	9. 1	. 24	개정	2019.	2.	27	개정	2019.	5. 27	개정
2019.	8. 2	6 개	정 201	9. 12	. 20	개정	2020.	2.	17	개정	2021.	2. 18	개정
2021.	8. 1	8 개	정 202	1. 12	. 14	개정	2022.	2.	21	개정	2022.	3. 25	개정
2022.	4. 2	2 개	정 202	2. 9	. 27	개정	2022.	12.	26	개정	2023.	5. 12	개정
2024.	1. 2	6 개	정 202	4. 4	. 23	개정	2024.	5.	20	개정	2024.	6. 25	개정

제 1 장 총 칙

- 제 1조(목적) 이 학칙은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교육목적) 본 대학교는,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 정신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배양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실천하며 세계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덕성(德性)을 갖춘 창의적 지식인을 육성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27>

#### [제목개정 2019.5.27]

- 제 3조(교육조직) ① 본 대학교에 글로벌융합대학, 과학기술대학, 약학대학, Art & Design대학, 미래인재대학, 차미리사교양대학, 교직학부,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둔다.<개정 2008.2.26, 2008.9.29, 2009.6.22., 2010.3.25., 2018.4.23, 2019.5.27, 2022.9.27.>
  - ②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의 기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8.9.29>
- 제 4조(입학정원) ① 각 단과대학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단, 차미리사교양대학에는 별도의 입학정원을 두지 않는다.<개정 2008.1.21, 2009.11.26., 2014.10.31., 2015.5.29., 2016.2.17., 2018.2.19., 2018.4.23., 2019.5.27., 2020.2.17., 2022.3.25., 2022.4.22., 2023.5.12., 2024.4.23.>
  - ② 각 단과대학의 입학정원과 각 전공의 최대배정인원은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조 정한다.<개정 2014.12.24., 2015.5.29, 2019.5.27, 2021.2.18.>
  - ③ 각 단과대학의 입학정원과 각 전공의 최대배정인원의 조정을 위한 평가시기의 결정과 평가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5.29, 개정 2021.2.18.> [제목개정 2019.5.27]
- 제 4조의 2(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등)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6.24>
  - ②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학생의 수업료, 학기 및 수업 일수, 설치운영 기간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6.30]

# 제 2 장 수업연한 및 조기졸업

- 제 5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약학대학은 6년으로 한다.<개정 2014.5.15., 2020.2.17>
  - ②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약학대학은 9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 정 2013.12.23., 2019.1.24, 2020.2.17>
  - ③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본 대학교에서 인정받은 학기가 포함된다.

<신설 2019.1.24>

-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12.23.. 개정 2019.1.24>
- ⑤ 재학연한 만료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할 경우 재학연한은 1학기 연장된다.<신설 2019.1.24>
- ⑥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재학연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1.24>
- 제 6조(조기졸업) 학업성적이 우수하고(평점평균 4.0 이상) 4학년 전과정을 조기 이수 한 학생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업연한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 제 3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 제 7조(학년도 및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이를 제1학기와 제2학기로 나누며, 일반학기 이외에 방학중에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1.8.18.>
  - ②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전공(학과)별, 학년별, 과정별 집중학기, 다학기 등의 유연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8.18.>
- 제 8조(수업일수) ① 수업기간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 수업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8.1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교과 목별로 수업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8.18.>
- 제 9조(휴업일)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일요일, 국정공휴일, 창학기념일, 하기방학, 동기방학 다만, 정기휴업일이라도 필요 한 때에는 수업을 과할 수 있다.

- 제10조(임시휴업) ① 입학전형, 졸업식,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8조의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한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②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8조의 수업일수에 불구하고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제 4 장 입 학

제11조(입학시기) 입학시기(재입학, 편입학 포함)는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입학자격) 본 대학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자라야 한다.

-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기타 법령으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13조(지원절차 등) ① 본 대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입학에 필요한 서류는 따로 정한다.
  - ③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납입한 전형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매 학년도의 입학요강에 따른다.
  - ② 전형방법에 관한 사항은 모집시기마다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 제14조의2(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다
  -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4.3.]
- 제15조(대학입학공정관리위원회) 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 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의 대학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부정입학자의 처리)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 제17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간에 총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납부금을 납입하는 등 수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이유없이 전항의 절차를 소정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 내지 제13조 의 자격미달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 제18조(일반편입학,학사편입학) ① 편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은 편입학요강에 따른다.
  - ② 본 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하며, 본 대학교에 재적중인 자는 편입학생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 ③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제3학년에 편입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④전적대학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 자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외국인학생규정」에서 정한 외국인 학생은, 대학에서 1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경우 본 대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다.<신설 2022.2.21.>
- 제19조(정원외 입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하는 때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1. 위탁학생

- 2. 외국인, 재외국민
- 3. 농어촌지역학생 특별전형 입학자
- 4. 학사 편입학자
- 5.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입학자
- ② 전항 각호의 자격 및 정원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0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허용범위 안에서 매학기 소정의 심사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②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5 장 전부, 전과, 전공변경

- 제21조(범위) 전부, 전과, 전공변경(이하 '전부'라 한다)은 소속 학부, 학과, 전공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22조(자격, 절차 등) 전부의 자격, 절차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23조(재학연한) 전부한 자의 재학연한은 전부 전에 재학한 기간을 포함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12.23.>

### 제 6 장 전공선택 및 이수<신설 2020.2.17>

- 제24조(전공선택 및 이수) ① 학생은 제1전공을 선택하여야 하고, 추가로 제2전공 또는 심화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학생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제3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단,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이하 "재직자전형"이라 한다) 입학자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신설 2020.2.17, 개정 2022.2.21., 2024.1.26>
  - ② 제1전공은 입학한 모집단위에서 선택하여 이수해야 한다.<신설 2020.2.17>
  - ③ 제2전공은 약학과와 유아교육과를 제외한 모든 전공에서 선택할 수 있다.<신설 2020.2.17>
  - ④ 제2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심화전공을 이수해야 한다.<신설 2020.2.17>
  - ⑤ 제1전공, 심화전공, 제2전공, 제3전공, 부전공의 세부시행(학점이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신설 2020.2.17, 개정 2024.1.26.>
- 제25조(제1전공) ① 제1전공은 1학년말에 선택한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택의 시기를 달리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신설 2020.2.17>
  - ② 제1전공 선택가능 인원은 모집단위 내 전공 최대배정인원 범위 내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신설 2020.2.17>

- ③ 제1전공의 변경은 제21조부터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0.2.17> 제26조(제2전공) ① 제2전공은 1학년말에 선택한다.<신설 2020.2.17>
  - ② 제2전공 선택가능 인원은 제한하지 않는다.<신설 2020.2.17>
  - ③ 제2전공은 변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신설 2020.2.17>

# 제 7 장 등 록

- 제27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등록은 수강신청과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 제28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소정기간에 매학기 이수할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②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간에 매학기 최소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신설 2013.12.23.>
  - ③수강신청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수강편람에 공고한다.<개정 2013.12.23.>
  - ④ 수강신청 과목의 이수,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 정 2013.12.23.>
- 제29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 기간에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등록금은 수강학점별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9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등록금 책정 및 심의를 위하여 등록금심 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11.1.20>
  -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1.1.20>
- 제30조(등록금의 감면금지) 일체의 등록금은 결석, 휴학, 근신, 정학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 제31조(등록금의 반환) 등록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8 장 휴학, 복학, 유급, 퇴학 및 제적<개정 2021.2.18.>

- 제32조(휴학) ①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교할 수 없는 일수가 3주일 이상일 경우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신입생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6.22, 2019.1.24>
  - ②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거나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수업을 계속할 수 없다

- 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제33조(휴학기간) 휴학기간은 통상 3년(약학 6년제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신·출산·육아·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2년의 기간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6.22., 2016.8.30, 2021.12.14.>
- 제34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개정 2009.6.22>
- 제34조의2(유급) ① 약학대학 학생 중 당해 학년(2개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는 당해 학년을 유급한다.
  - ② 유급이 된 학생의 당해 학년의 모든 학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2.18.]
- 제35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다.
- 제36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개정 2008.9.29>
  - 1. 소정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2. 휴학기간 경과 후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3. 재학중 통산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약학대학 6년제 학생은 통산 4회). 다만, 1학년은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개정 2021.2.18.>
  - 4. 본인 사망시
  - 5. 이중학적을 보유한 자
  - 6. 재학연한이 경과한 후에도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신설 2013.12.23.>
  - 7. 수업연한 초과자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휴학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신설 2013.12.23 >
  - 8. 약학대학 재학 중 통산 2회(2+4년제) 또는 3회(6년제) 유급된 자<신설 2021.2.18.>
  - 9. 기타 학칙상 제적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3.12.23.>

### 제 9 장 교육과정과 이수 및 졸업<개정 2017.2.17>

- 제37조(교육과정의 구분)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양, 전공, 교직과정 및 모듈형과정 (마이크로(Micro)디그리, 나노(Nano)디그리)으로 구분한다.<개정 2008.1.21., 2017.2.17, 2019.12.20>
- 제38조(교육과정) ① 전조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2.17.> ②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 동운영을 통한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과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

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2.21.>

- ③고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2.21>
- 제39조(개설과목 및 운영) ① 매 학기의 개설과목 및 수업시간은 그 학기 수업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 ② 수업은 정규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9.29>
- 제40조(학점) 교과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1학점의 이수단위를 학기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기, 실험, 실습, 체육 등의 학점당 이수시간은 따로 정한다.
- 제41조(과목별 설강인원) 과목별 설강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2조(시험)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중간과 학기말에 정기시험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학기 중에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6.8.30>
- 제43조(응시자격 상실 및 추가시험) ① 학기중 과목별 결석시간수가 그 과목의 주당 배정시간수의 3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필요한 경우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6.8.30>
  - ③ 추가시험 과목의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 제44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결과·출결상황·과제 및 수시평가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다.<개정 2016.8.30>
  - ② 평가내용은 별도 규정에 의하되, 별도 출석점검및결석조치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6.8.30>
  - ③ 학과목의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사정하고, D급 이상은 급제로 하며, F급은 낙제로 한다.

등 급	평 점	등 급	평 점
$A^{+}$	4.5	Aº	4.0
$\mathbf{B}^{+}$	3.5	$\mathbf{B}^{\mathrm{o}}$	3.0
$C^{+}$	2.5	Co	2.0
$D^{+}$	1.5	$D^{o}$	1.0
F	0		

④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8.30>

#### 제45조 삭제 <2009 3 25>

- 제46조(재수강) ①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 할 수 있다.
  - ② 삭제 <2014.5.15.>
  - ③ 재수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7조(수강과목 철회) ① 수강하고 있는 과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수강과목 철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8조(학점의 인정 및 취소) 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 ②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한다.
  - ③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 ④ 소정의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2학점 범위안에서 학점을 인정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9.3.25>
- 제49조(학점교류 및 학점인정) ① 대학간 상호교류협정에 따라 국·내외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총학점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취득학점으로 인정 할수 있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협정에 의한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총학점의 4분의 3 범위 내에서 취득학점으로 인정할수 있다.<개정 2010.5.24, 2024.1.26>
- ②학점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6.> 제49조의 2(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 취득학점 인정)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이수 한 교과목에 대하여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0.31.>
- 제49조의 3(진로탐색 학점인정)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활동에 대한 진로탐색 계획, 수행 결과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 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2.9.27.]

제49조의 4(학습경험 인정학점) 재직자전형 입학자의 재직 업무 경험을 전공 관련 학습경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4.1.26.]

제49조의 5(국고 및 외부지원 사업 학점인정) 국고 및 외부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 이수 실적을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따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4.6.25.]

- 제50조(학사경고) ① 학기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한다. 단, 9학기 이상 등록자, 계절학기 수강자, 전과목 P/NP과목 수강자는 제외한다.<개정 2016.8.30>
  - ②제1항에 의해 학사경고를 부과한 경우 이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보한다.
  - ③ 재수강에도 불구하고 학사경고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 ④ 학사경고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8.30>
- 제51조(이수학점 및 수료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18학점(약학 2+4년제는 25학점, 약학

6년제는 23학점)까지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12.1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학생은 21학점까지, 4.0 이상인 학생은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단, 약학대학 소속 학생 제외). 다만,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15학점(약학대학은 20학점) 이하로 이수학점을 제한한다.<개정 2021.12.14.>
- ③ 계절학기 수업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6학점으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이수학점에 관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학년별 수료학점은 아래와 같다.<개정 2021.12.14., 2024.1.26.> | 학년 | 일반 | 약학 2+4년제 | 약학 6년제 | 재직자 전형 |

1학년	33학점	36학점	30학점	
2학년	65학점	72학점	60학점	
3학년	98학점   41학점	114학점	90학점	
4학년	130학점  82학점	156학점	120학점	
5학년	123학점	198학점		
6학년	165학점	240학점		

[본조 조명 변경 및 제5항 신설 2015.11.24.]

- 제52조(졸업, 학사학위과정수료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①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은 130학점(재직자전형은 120학점, 약학 2+4년제는 165학점, 약학 6년제는 240학점) 이 상으로 한다. <개정 2011.1.20, 2021.12.14., 2024.1.26.>
  - ② 졸업을 위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졸업인증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③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해당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였으나 본조 제2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위과정수료로 하고, 학사학위취득이 가능함에도 이를 유예한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로 한다. <개정 2019.1.24>
  - ④ 학사학위과정수료와 학사학위취득유예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4.>
  - ⑤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졸업 요건으로 한국어능력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12.14>

[제목개정 2019.1.24]

[본조 조명 변경 및 제2항 개정, 제3항, 제4항 신설 2015.11.24.]

제53조 삭제<2020.2.17.>

- 제53조의 2(융합전공) ①「고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별표 1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과 관계없이 융합전공을 둘 수 있다.<개정 2024.6.25.>
  - ② 융합전공은 2개 이상의 전공(학과, 학부)을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으로 입학정

- 원이 없으며 제2전공, 제3전공 또는 부전공으로만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융합전공 중 한국학전공 및 한국어교육전공은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생에 한하여 제1전공으로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4.6.25.>
- ③ 융합전공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9.27.]
- 제53조의3(학·석사 연계과정) ①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이 상호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둘 수 있다.
  - ② 학·석사 연계과정의 자격기준과 운영방법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6.]
- 제54조(학점인정의 예외) 편입생, 재입학생 및 전부생에 대해서는 종전에 이수한 내용을 참작하여 학점을 인정하되, 이에 대한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5조(학위수여 종별)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2로 정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8.4.23., 2022.9.27., 2024.1.26., 2024.6.25.>
- 제55조의 2(학점인정등에 의한 학위수여 등)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총장이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 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나. 본 대학교에서 84학점 이상 취득한 자
  - 2.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 하기 위해 본 대학교에서 해당 전공학점 4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② 학위의 종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 정전공명 또는 [별표2]를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본조 전부 개정 2016.8.30.]

- 제55조의 3(학점인정과정 학습과정 운영 등) ① 학점은행제 과정의 학습과정 및 학점 당 수업시간, 출석 및 수업관리, 성적평가,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학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 [본조 신설 2016.8.30.]

- 제56조(졸업취소) 졸업생으로서 제4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한다.
- 제57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학년말에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학기말에도 후기 학위수여를 인정할 수 있다.
- 제58조(해외교류) 본 대학교와 외국대학간의 협약에 따라 학생의 교류 교육을 위하여

학점을 상호 인정하는 단기 해외유학제도를 운영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10 장 학생활동

- 제59조(학생자치단체) ① 대학문화를 창달하고, 전인적 인격함양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하기 위하여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단체를 두며, 학생자치단체의 설립, 활동 등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8.30.>
  - ② 학생자치단체의 내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학칙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학생자치단체의 회칙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6.8.30>
  - ③ 대학은 제2조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16.8.30>
  - ④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단체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개정 2016.8.30>

#### 제60조 <삭제 2016.8.30>

- 제61조(학생지도) ① 학생자치단체 및 학생의 학업, 진로, 학교생활 등에 대한 상담, 지도를 위해 지도교수 등을 둘 수 있다.
  - ② 기타 학생자치단체 및 학생의 지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본조 전부개정 2016.8.30.]

- 제62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① 대학은 학생자치단체 또는 학생의 자치활동(이하 자치활동이라 함)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자치활동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그 자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1. 반사회적 활동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 2. 폭력행위나 대학의 시설 및 비품 등을 훼손하는 경우
    - 3. 수업 및 연구 활동,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수행 등을 방해하는 경우
    - 4. 학칙 등 제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경우

#### [본조 전부개정 2017.2.17.]

- 제63조(학생자치활동의 신고) ① 자치활동을 행하면서 대학의 복지시설을 포함한 캠퍼 스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캠퍼스시설이용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치활동을 진행하는 자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인원 등을 학생지원과로 신고한다.
  - ③ 학내외를 막론하고 외부인사 또는 외부단체와 연계한 자치활동을 진행하려는 자는 사전에 학생지원과에 신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자치활동을 주관하려는 단체나 개인은 안전사고의 예방, 인권침해 행위의 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학생집단활동안전관리규정'에 따라 학생지원과에 사전에 신고하여야한다.

#### [본조 전부개정 2017.2.17.]

- 제64조(학생간행물) ① 학생자치단체 또는 학생은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을 그 형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제작·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간행물의 제작·배포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자치단체 또는 학생의 간행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그 간행물의 제작·배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1. 반사회적 내용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 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3.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4. 학칙 등 제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경우

[본조 전부개정 2017.2.17.]

### 제 11 장 포상과 징계

- 제65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2.17>
- 제66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무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 한다.
  - 1.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2.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 ② 징계의 절차 등 징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7.2.17.]

### 제 12 장 장 학

제67조(장학) 재학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본 대학교 장학금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13 장 공개강좌

- 제68조(공개강좌) 본 대학교에서는 교양, 실무 또는 학술연구에 필요한 이론, 실기 또는 그 응용방법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제69조(공개강좌의 운영)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및 장소 등 기타 세부사항은 개설할 때마다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 제70조(공개강좌의 수강) ① 공개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여석이 있는 경우 개강중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② 수강자로서 규율을 문란케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1조(공개강좌의 수강료)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강좌에 필요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 14 장 직제, 재계약 및 재임용

제72조(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2조의 2(재임용)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재계약)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총장이 인사규정과 내규로 따로 정한다.

### 제 15 장 산학협력단<개정 2024.4.23.>

- 제73조(산학협력단) ①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유지
  - · 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총장 직속의 산학협력단을 둔다.
  - ② 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정한다.
- 제73조의2(산학협력단의 업무) 산학협력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산학연 협력사업의 기획, 추진 및 평가
  - 2. 산학연 협력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 3.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 4. 산학연 교육프로그램 운영
  - 5.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 6. 삭제<2024.4.23.>
  - 7. 기타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본조신설 2012.5.24]

제74조(학교기업의 설치) 삭제<2024.4.23.>

제74조의2(학교기업의 현장실습) 삭제<2024.4.23.>

제74조의3(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삭제<2024.4.23.>

# 제 16 장 교수회

- 제75조(교수회) ① 학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및 단과대학에 교수 회를 둘 수 있다.
  - ② 교수회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외국인교원 및 특별계약교원은 제외한다.<개정 2009.10.22, 2012.8.14>
  - ③ 총장이나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교원, 특별계약교원 등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0.22>
- 제76조(교수회 소집) ① 대학교 교수회는 총장이, 각 대학 교수회는 학장이 이를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교수회의 재적교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의장은 1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총장은 대학별 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 제77조(교수회 심의사항) 교수회는 학교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
- 제78조(정족수) 교수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5조 제3항 단서에 의한 교원은 위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 17 장 교무위원회

- 제79조(교무위원회) 본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교무위원회를 둔다.
- 제80조(구성)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특수대학원장 포함), 단과대학장, 처장, 도서관장,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6, 2010.3.25, 2013.5.9, 2020.2.17>
- 제81조(의장)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 18 장 각 위워회

제82조(각 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1-1-16 덕성여자대학교학칙

② 각종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19 장 부속기관

- 제83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 부속기관으로 도서관, 박물관, 디지털정보기술원, 인권센터, 중앙실험관리실, 출판부, 기숙사, 건강증진센터, 덕성미디어센터, 약초원, 생활관, 실습림, 실습약국, 영재교육원 및 문화예술연구원 등을 둔다.<개정 2008.9.29, 2011.5.12, 2012.5.24, 2012.6.28, 2020.2.17, 2021.12.14., 2022.4.22., 2024.4.23.>
  - ② 부속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3조의2(부설연구소) ① 본 대학교에 차미리사연구소를 둔다.<개정 2012.6.28>
  - ② 삭제<2007.11.19>
  - ③ 글로벌융합대학에 인문과학연구소와 사회과학연구소를 둔다.<개정 2020.2.17>
  - ④ 삭제<2020.2.17>
  - ⑤ 과학기술대학에 자연과학연구소를 둔다.<개정 2020.2.17, 2024.4.23.>
  - ⑥ 약학대학에 약학연구소를 둔다.
  - ⑦ 삭제<2008.2.26>
  - ⑧ 삭제<2008.2.26>
  - ⑨ 차미리사교양대학에 차미리사교양교육연구소를 둔다.<신설 2021.12.14.>
  - ⑩ 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부설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1.12.14.>
- 제83조의3(부속교육기관) ① 본 대학교 부속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원을 둔다.<개정 2020.2.17>
  - ② 부속교육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20 장 명예교수

제84조(명예교수) 본 대학교에 명예교수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21 장 학칙개정

제85조(공고)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안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6조(심의) 개정안은 교무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 제87조(승인) 개정안 중 학교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6.24>
- 제88조(공포) 개정된 학칙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 즉시 효력을 가진다.

# 제 22 장 시간제 등록

- 제89조(등록시기) 시간제 등록생 등록은 매학기 초 30일 이내 소정의 전형을 거쳐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 제90조(등록자격) 시간제 등록을 원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 제91조(선발방법) 선발방법은 출신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 등의 성적으로 선발한다.
- 제92조(등록인원) 등록인원은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 제93조(이수학점) 이수학점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94조(학위수여 요건) 시간제 등록생으로서 본 대학교에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자의 학위수여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기준을 충족할 것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로서 본 대학교에서 8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다만,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 사에 합격한 자
- 제95조(학위수여 절차) ① 본 대학교에 학위수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 지를 조사·확인하여 졸업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 제96조(등록금)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금은 신청학점 기준으로 책정하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97조(시간제등록생 운영세칙) 시간제 등록생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23 장 자체평가

- 제98조(자체평가) ① 총장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

#### 2-1-1-18 덕성여자대학교학칙

- 법」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년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22]

### 제 24 장 장애학생 지원

- 제99조(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1.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2.3.25.>
  - 2. 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3.25.>
  - 3.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신설 2022.3.25.>
  -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22.3.25.>
  - 5. 위 법률에 따른 심사청구 사건에 관한 사항<개정 2022.3.25.>
  - 6.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개정 2022.3.25.> [본조신설 2011.6.30]
- 제10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21.8.18., 2024.4.23.>
  - ②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2. 교직원 · 보조인력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 3.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6.30.]

# 제 25 장 대학평의원회

제101조(대학평의원회) 본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장(제25장(제101조)) 신설 2015.2.25.]

제 26 장 사회봉사<신설 2019.2.27>

제102조(사회봉사활동) 본 대학교는 창학이념 및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2.27]

제103조(덕성사회봉사단) 원활한 사회봉사활동 수행을 위하여 덕성사회봉사단을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2.27]

제104조(사회봉사 교과목) 본 대학교는 학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봉사 교과목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2.27]

[본장(제26장(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 신설 2019.2.27.]

### 부 칙

- 1. 본 대학에 병설 초급대학을 둘 수 있다.
- 2. 이 학칙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3. 이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이를 따로 정한다.

# 부 칙

1. 이 학칙은 196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학칙은 196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학과명이 변경된 학과는 구 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 부 칙

1. 이 학칙은 197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1. 이 학칙은 1971년 10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1. 이 학칙은 197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1. 이 학칙은 1976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학칙은 197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2.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재학생(2,3,4학년)에 대하여는 변경전 학칙을 적용하되, 복학 및 재입학자에 대하여는 학장이 따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부 칙

1. 이 학칙은 1979년 5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1980년도 이전에 입학한 2부 학과 재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이 하고, 4학년 재학생에게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2학년 : 145학점 3학년 : 150학점

### 부 칙

1. 이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1. 이 학칙은 1984년 3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1. 이 학칙은 1986년 10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학칙은 1990년 2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단. 교육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 학칙을 개정한다.
- 2.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학생활동과 관련하여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변경전 학칙 제20조를 적용한다.

### 부 칙

- 1. 이 학칙은 1991년 10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학칙 제50조의 학사경고제도의 시행은 1992년 3월부터 전학년에 적용한다.

### 부 칙

- 1. 이 학칙은 1993년 4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년 4월 2일) 제2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12조 및 제6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3. (입학시기에 대한 특례) 제2항에 의해 재입학이 허가된 자 중에서 1993학년도 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학칙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4. (수업일수 부족) 제3항에 의해 재입학이 허가된 자 중에서 수업일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보충수업 및 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범위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부 칙

1. 이 학칙은 1993년 9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1. 이 학칙은 1994년 5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학칙은 1995년 6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학칙 제32조의 4호 단서 조항은 1996년 3월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1.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1996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변경전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복학 및 재입학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부 칙

- 1. 이 학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은 19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199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제52조 졸업 및 수료학점'과 '제53조 전공심화과목, 부전공, 복수전공'의 의무이수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 부 칙

1. 이 학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1-1-22 덕성여자대학교학칙

2. (경과조치) 학칙 제52조의 '단수전공심화과정'은 19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1.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학칙 제27조(등록)는 199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학칙 제53조(전공 심화과정, 부전공, 복수전공)는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1. 이 학칙은 2001년 9월 1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1. 이 학칙은 2002년 9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1. 이 학칙은 2003년 1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53조의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02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 칙

1. 이 학칙은 2003년 3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1. 이 학칙은 2004년 1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1.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1. 이 학칙은 2004년 3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1. 이 학칙은 2004년 5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 현재 자연과학대학 컴퓨터과학부의 컴퓨터시스템전 공, 인터넷정보공학전공에 재적중인 자의 소속은 정보공학대학 컴퓨터공학부의 컴퓨터시스템전공, 인터넷정보공학전공으로 변경한다.
- ② 이 학칙 시행일 현재 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스페인어전공에 재적중인 자의 소속은 각각 국어국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스페인어과로인문학부 사학전공, 철학전공, 미술사전공에 재적중인 자의 소속은 각각 사학과, 철학과, 미술사학과로 변경한다.

### 부 칙

1. 이 학칙은 2005년 4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1.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1. 이 학칙은 2006년 7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1. 이 학칙은 2006년 9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학칙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현재 사회과학부 정치학전공 재적중인 자의 소속은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전공으로 변경한다.

#### 부 칙

1. 이 학칙은 2007년 3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1. 이 학칙은 2007년 4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1.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학칙 제45조의 개정사항은 2008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②학칙 제83조의 제2항은 2007년 9월부터 적용한다.

### 부 칙

1.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2. [별표 1-10] 입학정원(2009학년도)은 약학대학 신입생을 선발하기 前년도까지만 운 영하다
- 3. [별표 2]전공별 수여학위종별은 Pre-Pharm · Med 전공자가 모두 졸업할 때까지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별표1-11 신설)
- 2.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현재 정보공학대학 컴퓨터공학부에 재적중인 자의 소속은 그대로 유지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의 개정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개정, 제98조 신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개정, 별표1-12 및 별표2-1신설)
- 2.(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현재 전공에 재적중인 자의 소속은 해당학과로 변경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1항, 제80조 개정)

#### 부 칙

- 1. (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49조 제1항 개정) ② 제4조 [별표 1-12] 및 제55조 [별표 2-1]의 개정사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4조 [별표 1-12] 및 제55조 [별표 2-1] 개정학칙 시행일 현재 해당전공 에 소속중인 학생들의 소속은 해당 학과로 변경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55조의 2 신설)

###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9조의2는 2010년 12월 2 일부터 적용한다.(제29조의2 및 제52조제4항 신설, 제52조제1항 및 별표2 개정, 제 52조제3항 삭제)
- 2. (졸업인증제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52조제4항은 2011학번부터 적용하며,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전 학칙을 적용한다.

####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12 및 별표 2-2 개정)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의2, 제99조, 제100조 신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74조 및 제83조 제1항 개정, 제73조의2 및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3 까지 신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83조 제1항 및 제83조의 2 제1항 개정)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75조 제2항 개정)

###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부터 별표2까지 개정)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74조 제1항 개정)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3.12.23.>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2. (재학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및 제36조 제6호의 개 정 규정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3. (수업연한 초과자의 수강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제2항 및 제36조 제7호는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 당시 수업연한 초과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이수하였으나 학과별 졸업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재학생은 201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4.2.18.>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5.15.>

-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 (성적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6장 제24조 내지 제26조 삭제 및 제101조 신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14조의2 신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4.26.>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8.30.>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11.17.>

-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디지털미디어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前) 재적생은 디지털미디어학과 소속으로 본다. 단, 복학 또는 재입학 학년이 2018학년도 이후입학한 학생과 동일한 학년일 때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IT미디어공학과 재적생

으로 소속을 선택할 수 있다.

### 부 칙<2017.2.17.>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2.19.>

-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학부, 학과, 입학정원 적용례) 제4조 제1항 및 별표 1 개정 사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3. (Pre-Pharm·Med 학과 명칭 및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 (前) 입학한 자연과학대학 Pre-Pharm·Med 학과 재적생의 소속은 그대로 유지하고 해당 학생의 학위과정 이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졸업할 때까지의 교육 등 학사관리는 2018학년도 3월부터 바이오공학과에 위탁한다. 다만, 소속의 변경을 희망하는 재적생은 학칙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특별전과에 의거하여 그소속을 공과대학 바이오공학과로 변경할 수 있다.
- 4. (디지털미디어학과 명칭 및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前) 입학한 정보미디어대학 디지털미디어학과 재적생은 그 소속을 공과대학 IT미디어 공학과로 변경한다.
- 5. (컴퓨터학과 명칭 및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前) 입학한 정보미디어대학 컴퓨터학과 재적생 및 2018학년도 공과대학 컴퓨터학과 입학생은 2019년 3월 1일자로 그 소속을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로 변경한다.

### 부 칙<2018.4.23.>

-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2. (교육조직, 학위수여 적용례) 제3조 개정 규정의 공과대학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하며, 정보미디어대학은 단과대학내 컴퓨터학과의 재적생이 있는 기간(2018학년도)까지 존속하고 해당 기간 컴퓨터학과의 학위는 개정 전(前) 학칙(별표 2)에 의거 수여한다.
- 3. (학부, 학과, 입학정원 적용례) 제4조 제1항 별표 1의 개정 사항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9.1.24.>

-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재학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9.2.27.>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5.27.>

-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前) 입학한 재적생의 소속은 그대로 유지한다.

# 부 칙<2019.8.26.>

-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위 시행일 전에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교육조직에 대해서는 그 신설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前) 입학한 재적생의 소속은 그대로 유지한다.

#### 부 칙<2019.12.20.>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2.17.>

-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 및 제83조의 개정 학칙은 해당 조직 개편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2.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 학칙은 2022학년도 약학 대학 신입학생부터 적용하고, 2022년 3월 1일 전(前) 입학한 약학대학 재적생 및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입학한 약학대학 편입학생은 개정 전(前) 제5조의 학칙을 적용한다.
- 3. (전공선택 및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 학칙은 2020 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20년 3월 1일 전(前) 입학한 재적생은 개정 전(前) 제53조의 학칙을 적용한다.

### 부 칙<2021.2.18.>

-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34조의2, 제36조제3호 및 제8호의 개정 학칙은 2021학년도 약학대 학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1.8.18.>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제8조, 제100조)

### 부 칙<2021.12.14.>

1. (시행일) 제33조, 제51조, 제52조 및 별표2의 개정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단, 제83조와 제83조의2의 개정 학칙은 해당 조직 개편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2.2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18조, 제24조, 제38조).

# 부 칙<2022.3.25.>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4.22.>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9.27.>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12.26.>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3.5.12.>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4.1.26.>

-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① 제24조제1항의 학칙은 2020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하며,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제51조제5항 약학 6년제 수료학점은 2024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된다.

### 부 칙<2024.4.23.>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4.5.20.>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4.6.25.>

-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제53조의2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0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 다.

[별표 1] 입학정원 <개정 2012.12.21., 2013.12.23., 2014.10.31., 2015.5.29., 2016.2.17., 2016.4.26., 2016.11.17., 2018.2.19., 2018.4.23. 2019.5.27., 2020.2.17., 2022.3.25., 2022.4.22., 2023.5.12., 2024.4.23., 2024.5.20>

		2022학년도		2023학년도	<u>:</u>	2024학년도	· –		
대학	학부	전공	입학 정원	전공	입학 정원	전공(학과)	입학 정원	전공(학과)	입학 정원
	어 하 하	국어국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영어영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스페인어전공		국어국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영어영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스페인어전공		국어국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영어영문학전공 불어불문학전공 독어독문학전공 스페인어전공		국어국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영어영문학전공 스페인어전공 사학전공	
글로벌	문화 학부	사학전공 철학전공 미술사학전공 문화인류학전공	사학전공 철학전공 미술사학전공 문화인류학전공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사학전공 철학전공 미술사학전공 문화인류학전공	583	사학전공 철학전공 미술사학전공 문화인류학전공	583	철학전공 미술사학전공 문화인류학전공 경영학전공	408
<u>융합</u> 대학	경상 학부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회계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법학전공		
	사회 과학 부	법학전공 사회학전공 문헌정보학전공 심리학전공 아동가족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의상디자인전공		법학전공 사회학전공 문헌정보학전공 심리학전공 아동가족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의상디자인전공		법학전공 사회학전공 문헌정보학전공 심리학전공 아동가족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의상디자인전공		사회학전공 문헌정보학전공 심리학전공 아동가족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정치외교학전공 의상디자인전공	
		유아교육과	39	유아교육과	37	유아교육과	37	유아교육과	37
소계			620		620		620		445
과학 기술 대학	BIT 공학 부 자연 과학	컴퓨터공학전공 IT미디어공학전공 사이버보안전공 소프트웨어전공 바이오공학전공 수학전공 정보통계학전공 화학전공	326	디지털소프트웨어공학부 바이오공학전공 수학전공 정보통계학전공 화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326	디자털소프트웨어공학부 바이오공학전공 수학전공 정보통계학전공 화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301	다시털소프트웨어공학부 바이오공학전공 수학전공 정보통계학전공 화학전공	194
	부	식품영양학전공 생활체육학전공		생활체육학전공		생활체육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약학 대학	약학과		80	약학과	80	약학과	80	약학과	80
Art & Design 대학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실내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텍스타일디자인전공		94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실내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텍스타일디자인전공	94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실내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텍스타일디자인전공	94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실내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텍스타일디자인전공 생활체육학전공	117
					1			자유전공학부	259
미래 인재						가상현실융합학과	40	가상현실융합학과	40
인세   대학						데이터사이언스학과	40	데이터사이언스학과	40
			ı					AI신약학과	40
합계			1,120		1,120		1,175		1,215

[별표 2] 전공별 수여학위종별 <개정 2012.12.21., 2013.6.24., 2014.2.28., 2018.4.23., 2021.12.14., 2022.9.27., 2024.1.26., 2024.6.25.>

대학	전공(학과)명	 학위명
71 7	(	7 7 7
	국어국문학	문학사
	일어일문학	문학사
	중어중문학	문학사
	영어영문학 불어불문학	문학사 문학사
	물이물군익 독어독문학	문학사 문학사
	속이속군의 스페인어	문역사 무학사
	스페인이 사학	문학사 무학사
	기 듹 철학	문학사
	교식 미술사	문학사
	문화인류학	문학사
글로벌융합대학	경영학	경영학사
	회계학	회계학사
	국제통상학	국제통상학사
	법학	법학사
	사회학	문학사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사
	심리학	문학사
	아동가족학	문학사
	사회복지학	문학사
	정치외교학	정치학사
	의상디자인	의상디자인학사
	유아교육	교육학사
	디지털소프트웨어공학부	공학사
	컴퓨터공학	공학사
	IT미디어공학	공학사
	사이버보안	공학사
기하기스레히.	소프트웨어	공학사
과학기술대학	바이오공학 수학	공학사 이학사
	구막 정보통계학	이약사 이화사
	정보증계약 화학	이익사 이학사
	되 의 식품영양학	이학사
	생활체육학	체육학사
자연과학대학	Pre-Pharm Med	이학사
약학대학	약화	약학사
17319	동양화	미술학사
	8 8 4 서양화	미술학사
Art& Design대학	실내디자인	미술학사
l mor besign ii i	시각디자인	미술학사
	텍스타일디자인	미술학사
	한국학	문학사
	한국어교육	문학사
미래인재대학	기후환경과문화	이학사
비대인세대약	AI신약학	이학사
	가상현실융합	공학사
	데이터사이언스 의상디자인	공학사
예술대학		미술학사

<sup>※ 2020</sup>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의상디자인전공 졸업자는 의상디자인학사, 201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의상디자인학과 졸업자는 미술학사 학위 수여

<sup>※</sup> 미래인재대학의 한국학전공, 한국어교육전공 및 기후환경과문화전공은 학칙 제53조의2에 따라 융합전공으로 설치

# [별지 1호 서식] <개정 2013.12.23., 2019.12.20>

제 호

학 위 증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아래의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전 공: 부전공: 연계전공:

200 년 월 일

덕성여자대학교 총 장

학위등록번호 덕성여대(학)

[별지 2호 서식] <신설 2016.8.30.>

제 호

# 학 위 증

성 명: 생년월일: 전 공: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55조의2 규정에 의하여 \_\_\_\_\_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학위등록번호 : 덕성여대-학점-0000-학000